

의안번호	2217718
의 퇴 인	박충권의원
회 답 일	2026. 3. 31.
추계번호	26B172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1,560만원(연평균 6,31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제1항)	300	-	-	-	-	300	60
국가인공지능데이터 센터진흥전문위원회 설치 (안 제6조·제7조)	1.2	3.6	3.6	3.6	3.6	15.6	3.1
계	301.2	3.6	3.6	3.6	3.6	315.6	63.1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효율적 구축과 진흥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공지능데이터센터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의 설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됨(제2항)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3.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5	안 제9조(실태조사)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현황, 기술 동향, 전력 사용량, 안전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0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고전력·고집적·고성능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구조,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보안, 재난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별도의 기술 기준 또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1조(인·허가 간소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허가, 환경 평가 등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12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조성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열회수기술, 단열기술, 액침냉각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하여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음(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등 조세 감면을 할 수 있음(제4항)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시, 인프라 시설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우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9	안 제13조(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등)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부담금의 감면 또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제1항)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할 수 있음(제2항)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에 적합한 부지 확보를 지원하고, 냉각에 필요한 공업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3항)	재량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5조(데이터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보관·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데이터의 적정한 수집·보관·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11	안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1항)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2	안 제17조(해외 사업자 유치·제휴 지원)	정부는 국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기술 기업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및 국내 사업자와의 기술 제휴·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18조(해외 진출 지원)	정부는 국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20조(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 또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안 제22조(비수도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하여 비수도권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기반시설 우선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전력 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7	안 제23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8	안 제24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전력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4. 공원 및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5. 그 밖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재량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입주 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내 토지 취득에 필요한 비용 2.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설비투자 및 장비 취득에 필요한 비용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입주 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제4항)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음.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5항)	재량·의무 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음.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재량·의무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음(제7항)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	안 제5조(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수립(제1항)	○	• 유사사례 참고						
		시행계획 수립(제3항)	—	•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행계획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을 토대로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인력 및 예산으로 수립 가능하므로, 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6조(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의 설치)		○	• 유사사례 참고						
4	안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안 제9조(실태조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으로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예산('26)</th></tr><tr><td>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산업 실태조사)</td><td>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등 산업 실태조사</td><td>100</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산업 실태조사)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등 산업 실태조사	100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산업 실태조사)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등 산업 실태조사	100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10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	—	•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건축물 구조,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보안, 재난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별도의 기술 기준 또는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 인력 및 예산으로 수립 가능하므로, 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11조(인·허가 간소화)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8	안 제12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의 대상, 내용,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9	안 제13조(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관련 부담금·전기요금의 감면·지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에 적합한 부지 확보 지원 등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등의 대상, 내용,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0	안 제15조(데이터 지원)	—	•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¹⁾에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및 민간 학습용 데이터 자원을 집결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AI 허브를 통해 공개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예산('26)</th></tr><tr><td>데이터경제 인프라구축 (AI허브 운영)</td><td>공공, 민간의 기구축·구축 예정인 학습용 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및 연계·등록을 통해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AI 활용을 지원</td><td>30,000</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데이터경제 인프라구축 (AI허브 운영)	공공, 민간의 기구축·구축 예정인 학습용 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및 연계·등록을 통해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AI 활용을 지원	30,000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데이터경제 인프라구축 (AI허브 운영)	공공, 민간의 기구축·구축 예정인 학습용 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및 연계·등록을 통해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AI 활용을 지원	30,000							

- 1)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관련 정책의 내용 및 규모, 양성기관의 수 및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예산('26)</th></tr><tr><td>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교육훈련)(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td><td>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td><td>40,000</td></tr><tr><td>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td><td>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td><td>21,000</td></tr><tr><td>지역디지털 인재양성(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td><td>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 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td><td>30,222</td></tr><tr><td>생성AI선도 인재양성</td><td>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td><td>27,000</td></tr><tr><td>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이노베이션 아카데미)</td><td>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td><td>45,127</td></tr><tr><td>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td><td>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td><td>8,400</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교육훈련)(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	40,000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	21,000	지역디지털 인재양성(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 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	30,222	생성AI선도 인재양성	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	27,000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45,127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	8,400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교육훈련)(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	40,000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	21,000																			
지역디지털 인재양성(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 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	30,222																						
생성AI선도 인재양성	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	27,000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45,127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	8,4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17조(해외 사업자 유치· 제휴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및 국내 사업자와의 기술 제휴·협력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해외사업자의 투자 유치 및 국내 사업자와의 기술제휴·협력 지원의 대상, 내용,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3	안 제18조(해외 진출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기술력 향상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의 대상,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33%;">사업명</th> <th style="width: 33%;">사업개요</th> <th style="width: 33%;">예산('26)</th> </tr> <tr> <td>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td> <td>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을 위해 장비·SW 등 국산화 및 해외 진출 지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450</td> </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을 위해 장비·SW 등 국산화 및 해외 진출 지원	3,450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을 위해 장비·SW 등 국산화 및 해외 진출 지원	3,450							
14	안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정되는 전담기관의 수, 위탁 업무의 내용, 전담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5	안 제20조(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의견수렴 절차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기준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체 인력 및 예산으로 수립 가능하다는 의견이므로, 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6	안 제22조(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비수도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정되는 특구 및 지원 사업자의 수,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17	안 제23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예산('26)</th></tr><tr><td>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친환경 그린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td><td>－ 지자체·비수도권 중소기업 등 컨설팅 지원,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 전력 사용량 절감 등 데이터센터의 친환경·고효율 전환을 위한 국산 장비·SW 등 실증 지원 등</td><td>1,800</td></tr><tr><td>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td><td>국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성능 GPU 자원 제공 등 AI 기업·기관 대상 GPU 기반 AI 모델 학습·개발 환경 제공</td><td>19,151</td></tr><tr><td>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선도</td><td>생성형 AI 등 초거대 컴퓨팅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의 국산화 추진</td><td>7,000</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친환경 그린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 지자체·비수도권 중소기업 등 컨설팅 지원,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 전력 사용량 절감 등 데이터센터의 친환경·고효율 전환을 위한 국산 장비·SW 등 실증 지원 등	1,800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국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성능 GPU 자원 제공 등 AI 기업·기관 대상 GPU 기반 AI 모델 학습·개발 환경 제공	19,151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선도	생성형 AI 등 초거대 컴퓨팅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의 국산화 추진	7,000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친환경 그린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 지자체·비수도권 중소기업 등 컨설팅 지원,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 전력 사용량 절감 등 데이터센터의 친환경·고효율 전환을 위한 국산 장비·SW 등 실증 지원 등	1,800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국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성능 GPU 자원 제공 등 AI 기업·기관 대상 GPU 기반 AI 모델 학습·개발 환경 제공	19,151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선도	생성형 AI 등 초거대 컴퓨팅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의 국산화 추진	7,000													
18	안 제24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다만, 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는 제정안의 시행일과 위원 임명·위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2027년 회의 개최 횟수 1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제1항)
 - 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
 - 연구용역은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기본계획명	실시년도	예산
제3차(2022~2026)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1	200
임무지향적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수립 연구	2022	300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2	400
평 균		3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용 참조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3억원(연평균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본계획 수립	300	-	-	-	-	300	6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 설치(안 제6조·제7조)

- 제정안에 따른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유사한 사례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의회는 연 3회³⁾ 개최됨

[표 4] (유사사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당연직 위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¹⁾	민간위원
위원 수	11명	3명	6명
구성 인원	• 위원장: 1명(교육부장관) • 당연직위원: 10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광역지자체장 2명 • 교육감 1명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등 6명

주: 1) 2014년 최초 구성 당시 기준으로, 2025년 기준 시·도지사 1명, 교육감 1명이 위촉됨(위촉되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임기별로 변동됨)

자료: 교육부

- 2)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재정경제부차관이 지정하는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최근 3년간(‘22.7.~’25.6.) 평균 개최 횟수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함(행정안전부, 연도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참고)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20만원⁴⁾으로 하며, 회의 개최 횟수는 연 3회로 가정함
 - 다만, 제정안의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과 위원 임명·위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2027년 회의 개최 횟수 1회)

[표 5]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안)

구 분	당연직 위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민간 위원
위원 수	11명	3명	6명
구성 인원	• 위원장: 1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당연직위원: 10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광역지자체장 3명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민간 전문가 등 6명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위원 구성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560만원(연평균 31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6	6	6	6	6	—	—
회의개최 횟수(B, 회)	1	3	3	3	3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2	3.6	3.6	3.6	3.6	15.6	3.1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2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 (목적) 친환경 장비·SW 개발 실증, 비수도권 인력양성, 산업실태조사 등 친환경 데이터센터 발전 및 지방분산 활성화 기반 조성 - (주요내용) 지자체·비수도권 중소기업 등 컨설팅 지원,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센터의 친환경·고효율 전환을 위한 국산 장비·SW 등 실증 지원,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등 산업 실태조사 등	1,800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 (목적)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을 위해 장비·SW 등 국산화 및 해외 진출 지원 - (주요내용) 국산 장비·SW 개발·실증 고도화, 실증테스트 베드 구축, 인식개선 및 홍보 추진 등	3,450
	데이터경제 인프라구축 (AI허브 운영)	- (목적) 공공, 민간의 기구축·구축 예정인 학습용 데이터 수집체계 마련 및 연계·등록을 통해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AI 활용을 지원 - (주요내용)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로 구성된 14대 분야 약 900여종의 데이터와 산출물(AI 모델, 저작도구 등)을 구축·개방, 헬스케어 등 데이터를 유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존'을 운영하고, AI-허브 고도화(검색기능 개선 등)를 통해 활용 촉진	30,000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 (목적) 국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성능 GPU 자원 제공 등 AI 기업·기관 대상 GPU 기반 AI 모델 학습·개발 환경 제공 - (주요내용) 국가 AI 데이터센터 GPU 자원 임차, 고도화 설계 용역 실시	19,151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선도	- (목적) 생성형 AI 등 초거대 컴퓨팅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의 국산화 추진 - (주요내용) 데이터센터 서버랙 내/간 AI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상호연결·운용하기 위한 AI 네트워킹 인프라 연구개발	7,000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교육훈련)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	○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 - (목적)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 (주요내용)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	40,000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26)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 (목적)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 - (주요내용)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 지원 등 ○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 (목적) 국내 대학이 기업과 함께 AI Core 및 AI융합 특화 교육을 통해 실전형 AI혁신(AX : AI Transformation) 고급인재를 집중 양성 - (주요내용) 기업주도형으로 설립된 대학 내 인공지능혁신대학원 지원	21,000
	지역디지털 인재양성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	○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 - (목적)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 - (주요내용) ICT콤플렉스 지원, 디지털신기술교육, 빅테크기업교육, 소외계층 AI·SW교육 등	30,222
	생성AI선도 인재양성	○ 생성AI핵심고급인재 - (목적) 대학원생 대상, 국내 생성AI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핵심 고급인재로 양성하여 생성AI 기술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국내 대학이 국내·외 생성AI 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핵심 연구개발 인재 양성에 따른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지원	27,000
	디지털전문·융합 인재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 (목적)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 (주요내용) 혁신적인 AI·SW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	45,127
	디지털전문·융합 인재양성 (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 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 (목적)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 - (주요내용) 산업계재직자AI교육, 산업맞춤형혁신마우처, 디지털전환전문가양성, ICT경단녀AI·SW교육 등	8,4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참고자료 2]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현황(2024년 기준)

(자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구축년도
1	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 IT센터	부산 강서구	2018
2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네트웍스 송도 IDC	인천 연수구	2010
3	DB Inc	DB죽전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2010
4	DGB금융그룹	DGB혁신센터	대구 동구	2018
5	Digital Realty	ICN10	서울 마포구	2022
6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서울 중구	2001
7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파인낸스	경기 용인시	2001
8	JB금융	광주은행본점센터	광주 동구	2018
9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염창센터	서울 강서구	1984
10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	경기 김포시	2019
11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여의도센터	서울 영등포구	1997
12	KINX	케이아이엔엑스 도곡센터	서울 강남구	2001
13	KT Cloud	KT청주(분평)IDC	충북 청주시	2000
14	KT Cloud	KT대전(탄방)IDC	대전 서구	2017
15	KT Cloud	KT목동1IDC	서울 양천구	2008
16	KT Cloud	KT강남IDC	서울 강남구	2007
17	KT Cloud	KT여의도IDC	서울 영등포구	2015
18	KT Cloud	KT천안CDC	충남 천안시	2010
19	KT Cloud	KT분당IDC	경기 성남시	2001
20	KT Cloud	KT목동2IDC	서울 양천구	2016
21	KT Cloud	KT용산IDC	서울 용산구	2021
22	KT Cloud	KT부산송정 GHC	부산 해운대구	2024
23	KT GDH	KT GDH	경남 김해시	2011
24	LG CNS	상암IT센터	서울 마포구	2006
25	LG CNS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산 강서구	2012
26	LG CNS	LG CNS 인천센터	인천 계양구	1992
27	LG CNS	LG CNS 가산센터	서울 금천구	2009
28	LG유플러스	LG U+ 서초1 IDC	서울 서초구	2001
29	LG유플러스	LG U+ 서초2 IDC	서울 서초구	2002
30	LG유플러스	LG U+ 대구IDC센터	대구 중구	2000
31	LG유플러스	LG U+ 가산IDC	서울 금천구	2009
32	LG유플러스	LG U+ 상암IDC	서울 마포구	2013
33	LG유플러스	LG U+ 논현IDC	서울 강남구	1999
34	LG유플러스	LG U+ 평촌메가센터	경기 안양시	2015
35	Microsoft	MS KOREA	부산 강서구	2020
36	NH 금융그룹	NH통합IT센터	경기 의왕시	2016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구축년도
37	NH 금융그룹	농협정보기술연구원	경기 안성시	2006
38	NHN 클라우드	NHNC	경기 성남시	2015
39	NICE홀딩스	나이스데이터센터	서울 강동구	2014
40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서초센터	서울 서초구	2000
41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일산센터	경기 고양시	2005
42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분당센터	경기 성남시	2015
43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가산IDC	서울 금천구	2021
44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일산2IDC	경기 고양시	2021
45	SK(주) C&C	SK C&C 대덕데이터센터	대전 유성구	2001
46	SK(주) C&C	SK C&C 판교데이터센터	경기 성남시	2014
47	SK텔레콤	성수국사	서울 성동구	2008
48	SK텔레콤	대덕국사	대전 서구	2016
49	교보정보통신	교보데이터센터	인천 연수구	2009
50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 춘천	강원 춘천시	2013
51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 세종	세종 집현동	2023
52	농협정보시스템	농협정보시스템 여의도 IDC센터	서울 영등포구	2009
53	다우기술	다우IDC마포센터	서울 마포구	2016
54	대상정보기술	대상그룹 전산센터	서울 중랑구	2019
55	더존비즈온	더존비즈온 D-클라우드센터	강원 춘천시	2011
56	드림마크윈(드림라인)	드림마크윈 구로IDC	서울 구로구	2019
57	롯데 이노베이트	제1센터 서울센터	서울 금천구	2007
58	롯데 이노베이트	롯데정보통신 용인 정보기술연구소	경기 용인시	1996
59	롯데 이노베이트	마북4센터	경기 용인시	2020
60	삼성SDS	삼성SDS 수원데이터센터	경기 수원시	2007
61	삼성SDS	삼성SDS 구미데이터센터	경북 구미시	1996
62	삼성SDS	삼성SDS 상암데이터센터	서울 마포구	2015
63	삼성SDS	삼성SDS 춘천 데이터센터	강원 춘천시	2019
64	삼성SDS	삼성SDS 동탄 데이터센터	경기 화성시	2023
65	세종네트웍스	분당센터	경기 용인시	2007
66	수협중앙회	데이터센터	서울 송파구	2019
67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 데이터센터	경기 김포시	2019
68	신한은행데이터센터	신한은행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2013
69	신한은행재해복구센터	신한은행 재해복구센터	경기 고양시	1999
70	싸이버원	싸이버원 IDC	서울 동작구	2002
71	아시아나IDT	아시아나데이터센터	서울 강서구	2008
72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FIS 상암센터	서울 마포구	2009
73	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경기 안산시	2023
74	케이엘넷	IDC센터	서울 강남구	2013
75	코스콤	코스콤 여의도 DC	서울 영등포구	1996
76	코스콤	코스콤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2002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구축년도
77	포스코DX	포스코 포항데이터센터	경북 포항시	2018
78	포스코DX	포스코 충주데이터센터	충북 충주시	2012
79	포스코DX	포스코 광양데이터센터	전남 광양시	2019
80	하나금융티아이	통합데이터센터	인천 서구	2017
81	한화시스템	한화그룹통합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2010
82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파주데이터센터	경기 파주시	2011
83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광주데이터센터	광주 광산구	2016
84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의왕 데이터센터	경기 의왕시	1992
85	호스트웨이아이디씨	호스트웨이IDC	경기 성남시	2000
86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 IDC센터	서울 종로구	2010
87	신테카바이오	신테카바이오	대전 유성구	2023
88	NHN클라우드	국가AI데이터센터	광주 북구	2023
89	KINX	과천데이터센터	경기 과천시	2024
90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경기 안양시	2023
91	드림마크원	인천데이터센터	인천 가좌동	2023
92	에퀴닉스	SL2x	경기 고양시	2023